

한-중국 FTA ICT 분야 주요 협정 내용 및 시사점

■ 박 은 지*

1. 개 요

2015년 11월 30일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중국 역시 국무원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12월 20일 한-중국 FTA가 공식 발효 예정이다. 한-중국 FTA는 2012년 5월 처음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11월 타결 선언 후,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¹⁾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이 FTA 상 최초로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 챕터를 채택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상품 시장 개방 관련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중 FTA 영향 평가’에 의하면, 한-중국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되며, 53억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ICT통상센터 전문원, (043)531-4472, ejpark@kisdi.re.kr
1) 산업통상자원부(2015. 12. 9), “한중 FTA, 12월 20일 발효 예정”, 보도참고자료

다.²⁾ 본 동향자료는 한-중국 FTA 발효에 앞서 양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분야 관련 한-중국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통신 협정문

한-중국 FTA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이 최초로 별도의 통신협정문을 채택했다는 것이다.³⁾ 이는 기존 WTO GATS 상 통신부속서 및 통신참조문서 보다 진일보한 통신서비스 규범으로 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분야의 보다 강화된 규범 협정 체결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 사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중국의 불공정, 불투명한 통신서비스 분야 국내 규제 환경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한-중국 FTA 상 중국의 통신협정문 최초 체결 경험이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⁴⁾ 및 한-중-일 FTA 등 협상에서도 중국이 보다 진일보한 통신협정문 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국 FTA 통신협정문은 <표 1>과 같이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GATS 통신부속서 및 통신 참조문서 상 존재하던 통신 규범을 기반으로, 제 10.4조 공중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의무, 제 10.5조 해저케이블시스템, 제 10.11조 통신규제기관의 집행권, 제 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제 10.16조 국제로밍요금 등 WTO GATS 보다 추가된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 규범을 중국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다.

2) KOTRA(2015. 6. 2), “한·중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커”.

3) 중국은 전자상거래 캡터 역시 FTA 최초로 별도 채택하고 있으나, WTO 전자적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 및 전자 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협력 등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4)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표 1> 한-중국 FTA 통신 협정문 구조

구분	내용
제10.1조	적용범위
제10.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제1절 (제10.3조)	공중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접근 및 이용)
제2절 (제10.4조, 제10.5조)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호접속에 관한 의무 (상호접속, 해저케이블 시스템)
제3절 (제10.6조)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적 의무 (경쟁보장장치)
제4절 (제10.7조~제10.17조)	기타 조치 (독립적 규제기관, 보편적 서비스, 허가절차,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집행, 분쟁 해결, 투명성,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업계와의 협의, 국제로밍요금,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5절(제10.18조)	정의

자료: 한-중국 FTA 협정문 제10장 통신

이중 제 10.5조 해저케이블 시스템의 경우, WTO GATS 체결 당시에는 중요도가 높지 않던 해저케이블이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인터넷망의 접근 보장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점을 감안하여 해저케이블 특화된 조항을 한국의 한-미국 FTA 통신협정문 경험을 기반으로 성안, 채택하고 있다. 동 조항은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국 FTA 통신협정문 중 제 10.16조 국제로밍요금은 한국이 체결한 어떠한 FTA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규 조항으로, 양 당사국이 각 국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양 당사국간 국제모바일 도매요율을 인하하도록 장려한다는 협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의 경우, 1항을 통해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 선택 유연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기술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

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고,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입안, 채택 가능하다고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거나 반박 가능하다고 각주 5를 통해 명확화하고 있다. 동 조항의 내용은 ‘기술표준에 관한 정부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GATS VI조 국내규제 4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및 표준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FTA 상 최초로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중국은 TD-SCDMA 등 자국 특화된 기술 표준을 국제표준화 노력과 함께 자체 표준으로 공세적으로 채택해오고 있는 바, 이러한 중국의 자체 표준이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한-중국 FTA를 통해 동 조항을 근거로 추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저케이블,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등 WTO GATS 보다 진일보한 통신 규범 채택은 중국의 통신 규제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한-중국 FTA 통신 협정문 체결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중국 통신 규제 및 무역 환경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사업자들의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더욱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한-중 FTA와 WTO·한-미국 FTA 통신협정문의 규제수준 비교

구 분	WTO GATS	한-중 FTA	한-미 FTA
범위	부속서2조 참조문서 도입부	10.1조	14.1조
정의	부속서3조 참조문서 도입부	10.18조	14.24조

구 분		WTO GATS	한-중 FTA	한-미 FTA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		부속서5조	10.3조	14.2조
공중 통신 사업자의 일반 의무	상호접속		10.4조	14.3조 1항
	상호접속으로 취득한 정보의 유용 금지		10.4조1항 나.	14.3조 1항 나.
	번호이동성			14.3조 2항
	동등다이얼			14.3조 3항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적 의무	타방당사국 사업자에 비차별대우			14.4조
	경쟁보장장치	참조문서 1조	10.6조	14.5조
	재판매			14.6조
	망요소세분화(UNE)			14.7조
	상호접속	참조문서 2조	10.4조	14.8조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14.9조
	설비병설			14.10조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비포설권			14.11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10.5조	14.12조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조건				14.13조
개도국을 위한 기술적 협력		부속서6조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참조문서 5조	10.7조	14.14조
보편적 서비스		참조문서 3조	10.8조	14.15조
허가절차		참조문서 4조	10.9조	14.16조
회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참조문서 6조	10.10조	14.17조
통신 및 관련 트래픽데이터의 비밀성				
통신규제기관의 집행권			10.11조	14.18조
국내 통신 분쟁 해결 절차		참조문서 2.5조 (상호접속에 한정)	10.12조	14.19조
투명성		부속서4조	10.13조	14.20조
통신 기술표준에 관한 조항			10.14조	14.21조
규제적용의 보류				14.22조
다른 장과의 관계			10.2조	
산업과의 협의			10.15조	
국제로밍요금			10.16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10.17조	

자료: 강하연 외(2014), pp.25~26, ‘〈표 2-2〉 한-중 FTA와 한-미 FTA·한-EU FTA 통신협정문의 규제수준 비교’ 재작성

3. ICT 서비스 시장 개방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의 경우 양 당사국은 WTO GATS 방식인 포지티브 양허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 약속하고 있다. 협상 결과 면에서도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WTO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1차 양허 협상을 마무리 하였으며, 양 당사국은 협정 발효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2차 후속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하여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양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은 설비보유서비스(무선국 허가 포함)에 대해 49%의 직접투자제한, 80%의 간접투자제한을 기재하고 있으며(단, 외국정부, 외국자연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일 경우는 15% 미만), 중국은 합작기업 형태를 통해서만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무선호출의 경우 50%)임을 명기하고 있다.

<표 3> 한국/중국 기본통신서비스 분야 양허 비교

구분	중국	한국
기본통신서비스 개방대상	2. C. 통신서비스	2. C. 통신서비스
	a. 음성전화	a. 음성전화
	b. 패킷데이터전송	b. 패킷데이터전송
	c. 회선데이터전송	c. 회선데이터전송
		d. 텔렉스
		e. 전신
	f. 팩스	f. 팩스
	g. 전용회선	g. 전용회선
	기타 : 호출, 모바일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아날로그/디지털/셀룰러, PCS)	o. 기타 : 디지털 이동전화, 호출, PCS, TRS, 이동데이터서비스, 인터넷접속 서비스(IAS), PSTN 접속 VoIP

구분	중국	한국
기본통신서비스 개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 1, mode 3 : 합작 요건 및 49% 외국인지분제한(호출은 50%) ○ mode 2 제한 없음 ○ mode 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 1: 상업적 약정 체결 요건 ○ mod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49% 지분 제한 - 간접투자: 80% 지분 제한(단, 외국정부, 외국인자연인, 외국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는 15%) - KT 최대주주 제한 ○ mode 2 제한 없음 ○ mode 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표 4> 한국/중국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양허 비교

구분	중국	한국
부가통신서비스 개방대상	2. C. 통신서비스	2. C. 통신서비스
	h. 이메일	h. 이메일
	i. 음성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DB 검출	j. 온라인 정보/DB 검출
	k. EDI	k. EDI
	l. 고도/부가 팩스	l. 고도/부가 팩스
	m. 부호/프로토콜 변환	m. 부호/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n. 온라인 정보/데이터 처리
	o. 기타 : 온라인 DB 및 원격 컴퓨팅	
부가통신서비스 개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 1, mode 3 : 합작 요건 및 50% 외국인지분제한 ○ mode 2 제한 없음 ○ mode 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 1-3 제한 없음 ○ mode 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양 당사국간 시장개방 수준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 한국의 경우 mode 4(자연인이동) 제한 외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합작기업 내 최대지분투자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추가로 양국은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장에 대해 mode 4(자연인 이동) 제한 외 모두 개방 약속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은 비디오 유통, 음반녹음 유통, 영화극장 서비스 시장 3개 분야를 개방 약속하고 있으며, 비디오 및 음반녹음 유통에 대하여 합작의무 및 당국의 검열 권한 유보, 영화극장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 49% 제한 및 매년 20건 이하의 영화수입통제 등 다양한 시장진입 제한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한국은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케이블방송프로그램 제외)과 음반녹음서비스 2개 분야에 대하여 개방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시장진입제한이나 내국민 대우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 모두 방송서비스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표 5> 한국/중국 시청각서비스 분야 양허 비교

구분	중국	한국
시청각서비스 개방대상	2. D. 시청각서비스	2. D. 시청각서비스
	비디오(엔터테인먼트 SW 포함)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배급 및 제작(케이블방송용 제외)
	음반녹음 배급	e. 음반 제작 및 배급(음반녹음)
	영화극장	
시청각서비스 개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 1, 2 제한 없음 ○ mod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음반녹음 배급 : 합작의무, 검열 조건 - 영화관 : 49% 지분 제한 - 추가약속 : 20건 이하의 영화수입만 허용 ○ mode 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 1-3 제한 없음 ○ mode 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상기 양국의 서비스 양허표 분석 결과, 한국 및 중국 모두 WTO DDA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통신 및 시청각 서비스 시장을 개방 약속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향후 2 단계 후속 양허 협상이 개시될 경우 양국의 시장개방 불균형이 두드러지는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측 50% 지분 제한 철폐 또는 완화, 국경간 공급 제한 철폐 등 추가 시장 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IT 상품 시장 개방 및 TBT 협정

IT 상품의 경우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ical Agreement, 이하 ITA)을 통해 이미 상당 품목이 무관세인 상황에서 한-중국 FTA에 따른 IT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상품 중 반도체는 이미 ITA 무관세 품목이며, 관세가 유지되던 LCD 패널에 대해 양국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미 중국 현지 제품이 중국 LCD 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군에 있어 한국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⁵⁾ IT 제품 전반에 걸쳐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유예 후 관세 철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중국 FTA에 따른 IT 상품 관세 철폐 효과 보다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국 FTA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이하 TBT) 협정과 같이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TBT 챕터를 통해 상품 수출 시 과한 기술 규제 조치 등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진일보하고 의무 수준이 높은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⁶⁾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관세 인하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중국 내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무역 장

5) 이경호(2015. 12. 8), “[한·중 FTA시대 - 전자기기] LCD패널 강세지속… 車내비 가격경쟁력↑”, 《아시아경제》.

6) KOTRA(2015. 7), “한·중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 KOCHI 자료 15-004.

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국은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소비자 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 총 15개 조항을 가급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다룬 적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조항 및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술협력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평가된다.⁷⁾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 상대 당사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⁸⁾ 한국 사업자들이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등 강력한 사전인증제도로 인한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협정 발효 후 품목별 MRA 체결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⁹⁾ 실제 2015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중국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CNCA)와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한-중 FTA 협정을 기반으로 양국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진행 중이다.¹⁰⁾

5. 방송 등 공동제작 및 협력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 챕터 ‘부속서 8-다.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통해,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중국은 외국산 방송물에 대해서 복잡한 편성규제, 황금시간대 방송규제, 수입량 제한 등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바, 동 부속서를

7) 유세별(2015. 7), pp.2~9.

8) 한-중국 FTA 제6.6조 3항

9) 유세별(2015. 7), pp.13~18

10) 제대식(2015. 11. 21), “[시론] 한·중 FTA로 무역장벽 돌파하자”, 《디지털타임즈》.

근거로 방송 공동 제작 협정이 체결될 경우 공동제작물을 통해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오는 무역 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양 당사국은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노력할 것을 협력챕터 내 문화협력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향후 동 문화협력조항을 기반으로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시장접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어

한-중국 FTA의 공식 발효를 계기로 ICT 관련 주요 협정 내용을 통신협정문, ICT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IT 상품 시장 개방 및 TBT 협정, 방송 공동제작 및 협력 근거조항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우선 중국의 WTO GATS 보다 진일보한 FTA 최초 통신협정문 채택은 중국의 통신규제 환경을 보다 선진화하고, 제도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ICT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은 양 당사국 모두 WTO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개방 약속하고 있어, 당장의 추가 시장 개방 효과는 없어 보이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분야 후속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동 후속 협상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무관세인 IT 상품 시장개방에 있어서도 협정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나, TBT 협정을 근거로 향후 MRA 협정 체결 등 양국의 상이한 적합성평가제도나 표준, 기술 규정으로 인해 오는 불필요한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중국 FTA 서비스 챕터 부속서 내용을 근거로 향후 방송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될 경우 폐쇄적 중국 방송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ICT 사업자가 앞서 언급한 한-중국 FTA 상 기회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시장개방 협상 및 MRA 협상, 방송공동제작 협정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 측의 한-중국 FTA 이행을 수시 점검하여 협정

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하연·윤승환·박은지·김승민·김재형 (2014),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정책연구 14-6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TRA (2015. 7), “한중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 KOCHI 자료 15-004.

산업통상자원부 (2015. 12. 9), “한·중 FTA, 12월 20일 발효 예정”, 보도참고자료.

KOTRA (2015. 6. 2), “한·중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가능성 커”.

유새별 (2015. 7), “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2015년 7월 14일 Vol.15 No. 19,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호 (2015. 12. 8), “[한·중 FTA시대 - 전자기기] LCD패널 강세지속...車내비 가격경쟁력↑”,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0808144727731>.

제대식 (2015. 11. 21), “[시론] 한·중 FTA로 무역장벽 돌파하자”,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302102351607001.

[협정문]

한-중국 FTA 협정문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한-중국 FTA 협정문 제8장 <서비스 무역> 부속서 8-가-1 중국 양허표

한-중국 FTA 협정문 제8장 <서비스 무역> 부속서 8-가-2 한국 양허표

한-중국 FTA 협정문 제10장 <통신>

한-중국 FTA 협정문 제13장 <전자상거래>